건 축 허 가 서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허 가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.

 건 축	구 분	신축		허 기	나 일 자	2002년	03월 04일			
[신 폭	구 교			설계변경일자						
허 가	번 호	2002 - 종합민원처리과 - 신축허가 - 31								
건	축 주	(주)아토	대표이사 문상영	주민등	등록번호	12431	1-0033235			
대지	위 치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블럭 17-4 오 창과 착 (영관)								
대지면적(㎡)		9,512.00								
건 축 물 명 칭		오창가스공장신축공사		주	용도	공장				
건축면적(㎡) :		2,921.73		건 🏻	를 율(%)	30.72				
연 면 적(m²)		4,002.25		용 적 률(%)			42.08			
가설건축물존치기간										
동번호	동명칭및번호		연면적(㎡)/(지하/지상)	동번호	동명칭및번호		연면적(㎡)/(지하/지상)			
1	가동		1,967.72/(0/1)	2	나동		1,652.22/(0/3)			

- *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- * 10동 이상일 경우에는 뒷면에 계속 됩니다.

다동

2002 년 03 월 04 일

67.43/(0/1) 4



라동

314.88/(0/1)

건축허가조건

신축허가: 2002-충청북도청원군종합민원처리과-신축허가- 3 2002년 3월 ★일 건 축 주 :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-1번지 시화공단 2다 302

㈜아토 대표이사 문상영

위 치 : 충북 청원군 오창면 오창과학산업단지 654-3(17-4블록)

위의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그외 필요한 조치(관계자 고발, 공사중지, 철거, 사용금지등)를 받게 되오니 허가조건 및 안내문을 참고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공사 착공전에 경계측량 등으로 대지경계를 확인하여 공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- 2. 공사착수전에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,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취소됩니다.(다만,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 연장가능)
- 3.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4.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(중간 감리보고서, 감리완료보고서 첨부)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 부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
- 5. 소화기, 옥내소화전, 자동화재탐지설비, 유도표지 등 소방시설을 국가검정품으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고, 완공검사를 받은후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6. 설계변경·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·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으시기 바 랍니다.
- 7.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8.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장의 토지사용승락조건 및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의 입주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9. 금강환경관리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10.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강환경관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.

- 11.일일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시(배출시설 설치시는 100kg이상)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12.발생폐수 및 오수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- 13.오·폐수의 유입처리승인신청 및 배수시설 설치시 충청북도종합건설본부장의 사전 승인과 중간검사, 완료검사, 사용개시신고 등 관계절차를 이행토록 하시고(양식4부),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충청북도종합건설본부장과 협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- 14.귀사에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과 「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」입주계약를 2건으로 체결하여 금회 17-4블록만을 공장건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됨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허가하오니 이후 건축설계변경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계약서를 1건(17-3블록과 17-4블록을 합한 계약)으로 재 체결을 선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15.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(고 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)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사업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(의견)서를 첩부하시어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

16.기타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,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주, <mark>갑리자</mark> 및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극적 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 내 문

- 1. 공사현장내 위해방지시설물(가설울타리, 안전망등)을 설치하여 공사하시기 바라며, 그 위해방 지시설물이 인접토지 및 통행인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,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·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.
- 2. 허가장소에 고압선 등 위험물이 있을시는 위험여부를 한전 등에 신고하시어 사전에 안전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3. 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,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 및 인접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4. 생활하수 및 정화조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5.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지하에 묻은 수도관, 하수관, 가스관,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해 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6. 인근의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시공 시에는 인접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 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발생 방지, 환경의 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7. 공사시공중 건축주, 공사시공자,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8. 부지정지공사 또는 건축공사 면적 1,000㎡ 이상시 비잔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,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9. 공사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폐기물을 5톤 이상 발생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,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폐유등을 불법으로 소각해서는 아니되며,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우리군 환경보호과 (청소담당부서 ☎251-3335)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10.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에 따른 급수전 설치,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우리군 환경보호과(상수도 담당부서 ☎251-3132)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1.일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 개발할 경우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를, 100톤이하일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·신고 등과 관련하여는 우리군 환경보호과(물관리담당부서 ☎251-3336)로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12.건축공사 현장의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방문 실명화를 위하여 붙임의 단속·점검 방문일지를 기록,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단속 · 점검 방문일지

	공 사 명	:			•		
① 공사명 및	현장위치 :						
발주기관등	발주기관(?	선축주) :					
	공사규모 :						
② 방문일시	년	월	일	: 부터.	: , 까지		
③ 방문근거 및 목적	b			•			
④ 업무수행 내용				•			
⑤ 기 타 특기사항					•		
⑥ 방 문 자 (①소속 : ②소속 : ③소속 :	직 : 직 : 직 :	2:	성명 성명 성명:	· (서명) ·(서명) (서명)		
⑦ 책임감리자 (공사감독관) 또는 현장소장 확인	소속 :	직급	•	성명:	. , (서명)		

〈작성요령〉

- 1. ③항에는 관계법령 조문, 지시명령, 행정계획 근거와 목적 등을 기재
- 2. ④항에는 업무수행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기재
- 3. 동일목적의 방문자가 3인 초과시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임 하여야 함.
- 4. ①항 및 ⑦항은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②~⑥항은 방문자가 기재, 직영공사로 감리자등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(건축주)가 기재